

자율운항선박 기자재 안전성 평가 표준수수료 및 상한액(제14조제2항 관련)

1. 자율운항선박 기자재 안전성 평가 표준수수료 및 상한액

시스템 개수 \ 구분	등급별	표준수수료	상한액	신청인 부담 상한액
3개	500톤 미만	32,953천원	43,937천원	10,984천원
	500톤 이상	39,544천원	52,725천원	13,181천원
2개	500톤 미만	29,658천원	39,544천원	9,886천원
	500톤 이상	35,589천원	47,452천원	11,863천원
1개	500톤 미만	26,362천원	35,149천원	8,787천원
	500톤 이상	31,635천원	42,180천원	10,545천원

1. 표준수수료는 사업비 내에서 부담하며, 보완 사항, 기술 난이도 등의 이유로 표준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금액은 평가가 완료한 금액을 말한다.  
 3. 시스템 개수는 자율운항선박을 구성하는 자율운항시스템의 시스템 구분의 개수를 말한다.  
 4. 시스템 개수가 4개 일시 자율운항선박 안전성 평가 표준수수료 및 상한액을 따른다.

2. 자율운항선박을 구성하는 자율운항시스템

시스템 구분	기능	구성 예
①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해상 환경과 관련된 선박의 외부상황과 내부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다수의 데이터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분석하여 결과를 운영자 또는 자율항해시스템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 물체/선박 감지 센서 모듈</li> <li>- Radar, Lidar 등</li> <li>· 해양 환경 감지 센서 모듈</li> <li>- 기상관측 센서, 파고관측 센서 등</li> <li>· 위치 및 항해 센서</li> <li>- 위성측위시스템(GNSS), 자이로 컴퍼스 등</li> <li>· 회피시점 분석 모듈</li> <li>· 회피대상 식별모듈</li> </ul>
② 자율운항시스템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내/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선박의 추진장치 및 조타(操舵)장치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	충돌회피, 항적제어, 경제운항, 비상제어
③ 통신시스템	본선과 정보 객체들 간의 통신에 관여하는 시스템	무선통신시스템, 위성통신시스템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④ 선외 지원 시스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임무 통제 컴퓨터, 운용제어반 인터페이스 시스템